

바이오헬과학연구센터 규정

제정 2019. 9. 19.

- 제 1조 (명칭)** 본 연구센터는 호서대학교 바이오헬과학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의약품, 화학물질 등 신물질 개발연구와 이들의 효능 및 독성발현 기전을 연구하며 신개발 물질과 제품의 효능, 안정성 평가 연구를 통하여 바이오 의과학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소재)** 연구센터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- 제 4조 (사업)** 본 연구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바이오헬과학 분야 신물질 개발
 2. 약리효능, 독성 및 위해성 평가 및 관련 연구기술 개발
 3. 바이오 소재, 유용 바이오센서 소재 개발
 4. 바이오헬학 및 바이오응용독성 전문인력 양성
 5. 산학협력을 통한 의약품, 바이오산업 육성
 6. 국제표준화와 국내·외 기관과의 공동 학술활동
 7. 개발기술의 패키지·상품화
 8.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 5조 (임원)** 본 연구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센터장 1명
 2. 간사 1명
 3. 운영위원 7명 이내
 4. 감사 2명
- 제 6조 (위촉)** 본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, 운영위원, 감사는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제 7조 (임원의 의무)** ①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② 간사는 연구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센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- 제 8조 (임원의 임기)**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제 9조 (운영위원회)** ① 본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
 2.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사항
 3. 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 10조 (조직편제)** ① 본 연구센터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과학연구팀, 바이오위해성연구팀,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.
② 본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, 전문위원, 연구보조원, 기술원 및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③ 본 연구센터내의 연구원 임용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④ 연구원은 학부생, 대학원생, 대학소속 연구원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한다.

제 11조 (재정) 연구센터의 재정은 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, 본교 간접연구경비, 외부 연구비,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2조 (회계연도)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13조 (폐쇄) 연구센터가 폐쇄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 14조 (운영세칙)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본 규정은「바이오의과학연구소」의 교책연구소 지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,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「바이오의과학연구소 규정」은 폐지한다.